

#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09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12월 17일  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본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,
- 보건복지부 지침등에 따라 시 건강증진센터장의 근무형태에 대한 규정 수정 및 잘못 인용된 문구를 삭제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함으로 수정함 (안 제1조)
- 나. 시 건강증진센터장의 상근을 원칙으로 함 (안 제7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,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”을 “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“상근하여야”를 “상근을 원칙으로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, 치료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u> 으로써 <u>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</u> 을 목적으로 한다.
제7조 (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) ① (생략) ②~③ (생략) ④ 광역센터의 장은 <u>상근하여야</u> 한다.	제7조 (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) ① <원안과 동일> ②~③ <원안과 동일> ④ 광역센터의 장은 <u>상근을 원칙으로</u> 한다.
제9조(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운영) ①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(생략)	제9조(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운영) ①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<원안과 동일>

##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·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라 함은 「정신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보건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정신보건센터”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광역정신보건센터(이하 “광역센터”라 한다)와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지역정신보건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서울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상담, 치료 및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·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정신질환이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

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,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계획(이하 "사업 계획"이라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
2.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
3.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
4.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
5.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
6.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
7. 정신보건시설의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·연수사업
8.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·협력사업
9. 그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이 「지역보건법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)** ① 시장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, 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발견·상담·진료·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·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,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시·구 간 연계체계 구축,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사업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7조(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)** ① 광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.

1. 정신보건사업(정신보건수행기관 등)의 연구·자문 및 평가 수행
2. 정신보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
3.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
4.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5. 정신증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평가 및 관리
6.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사업
7.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8. 정신보건에 관한 연구 및 통계 데이터관리
9. 시·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② 시장은 광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,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3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

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- ④ 광역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시장은 광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

**제8조(운영예산의 지원)** ① 시장은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예방·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사업 이외의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무상대부, 사용료 경감은 서울특별시가 정신보건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.

**제9조(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운영)** ①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
2.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
3. 정신보건관련기관·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
4. 정신보건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
5. 그 밖의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)** ① 시장은 센터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

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